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제도와 고위험병원체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위해 교육결과 의무보고 규정을 신설함.

또한, 질병매개곤충 방제 방법 배치를 조정하여 환경친화적 방제 가속화를 도모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제도를 정비하여 청구인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며,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부재로 기존 방법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2항 중 “보유허가를 하는”을 “취급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병원체 취급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

제41조제3항 중 “기관이”를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교육기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머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별표 1 제2호머목 단서 중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 후보주)”를 “공고하는 백신 후보주는”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다목) 1) 및 2)을 각각 2) 및 1)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8제2항, 별표1 제2호

머뭇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

분양하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양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 병원체 전 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일련 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이동계획에 대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영문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nexed Form No. 15-1]

Permit No.(Report Confirmation No.)

Biosafety facility handling high-risk pathogen

[] Permit
[] Report confirmation
[] Permission to change Permit info.
[] Confirmation to change Permit info.
[] Confirmation to change Report info.

※ Please mark √ in the appropriate bracket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Name of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s date of birth
	Address		Telephone Number
Permit info. (Report info.)	Installation • operation officer	Name	Telephone Number
	Biosafety officer	Name	Telephone Number
	High-risk pathogen administrator	Name	Telephone Number
	Type of facility [] General [] Large scale [] Animal use [] Insect use		
	Address(scale)		
	Biosafety Level		
	Pathogen handled		
	Conditions of Permit(repor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hereby grants below for biosafety facility handling high-risk pathog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Paragraph 3, Paragraph 4, Paragraph of Article 23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Paragraph 4, Paragraph 6 of Article 19-2, Paragraph 2, Paragraph 5 of Article 19-3, Paragraph 2 of Article 19-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Paragraph 2, Paragraph 4 of Article 20-2, Paragraph 2, Paragraph 4 of Article 20-3, Paragraph 2 of Article 20-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id Act.

- [] permit
[] report confirmation(recertification included)
[] permission to change permit information
[] confirmation to change permit information
[] confirmation to change report information

date / month / year

Directo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u>보유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 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 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야 한다.</u> <u><신 설></u>	② ----- ----- <u>취급시설 설치 ·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u> -----. 1. <u>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 운영 기준 준수</u>
<u><신 설></u>	2. 「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u> 」, 「 <u>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 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u> 」, 「 <u>가축전염병 예 방법</u> 」 등 병원체 취급 관련 <u>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③ -----

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교육기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은-----

② -----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나. (생략)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생략)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 . 이 경우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
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_____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

가. (현행과 같음)

4. _____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u>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u>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가 <u>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u>----- ----- -----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u>
--	--